즉시접수	당일접
	lac.or.kr
제출자	www.k
총	건

토지(입아)소유권보존등기 신청

접	년	월	일	처	접 수	기 입	교 합	각종통지
				리				
수	제		호	인				

부동산의 표시

등기	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				
신청	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				
구 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			지 분 (개인별)
신					
청					
인					



		–				≶ 🔝	
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							
부동산 표시	부동산별 /	시가표준역	핵	부동산별	국민주택	채권매입금액	
1.	금		원	금		원	
2.	급		원	금		원	
3.	금		원	금		원	
국 민 주 택	채 권 매 입 총	층 액		금		원	
국 민 주 택	채 권 발 행 변	<u>번</u> 호					
카드 제/드라	러드] 게\	ما	지병	방교육세	급	원	
취득세(등록도	면허세) 금	원	농어	촌특별세	급	원	
세 액	합계	금	-1			원	
		금				원	
등 기 신 청	수수료	납부번호	克:				
		일괄납부	計:	건		원	
	7.	험 부	서	면			
• 취득세(등록	면허세)영수필확여	인서 통	<7] E	1>			
・등기신청수	수료 영수필확인	서 통					
・토지·임야대	장등본	통					
• 주민등록표	등(초)본	통					
• 위임장		통					
		- 1	61	A 3			
		년	월	일			
위 신기	청인				(전화 :)	
(또는)	위 대리인				(전화:)	
	지방법원				귀중	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

토지(입야)소유권보존등기 신청

접	년	월 일	처	접수	기 입	亚克	합	각종통지
수	제	<u>ই</u>	리 인					

① 부동산의 표시

서욱특병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㎡

0

λz

2	등기의 목적	소유권 보존		
③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				
구 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(소 재 지)	지 분 (개인별)
④ 신 청 인	이 대 백	XXXXXX-XXXXXXX	서욱특병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긴 20 (서초동)	



						www.
	⑤ 시가표	준액 및 국	·민주	택채권매입	급 금액	Connection
부동산 표시	부동산별	시가표준의	H	부동산별	국민주택채권	년매입금액
1. 토 지	금 00,00	0,000	원	금	000,000) 원
2.	금		원	급		원
3.	금		원	급		원
⑤ 국 민 주	택 채 권 매 역	입 총 액		금	000,000) 원
⑤ 국 민 주	택 채 권 발 청	 행 번 호			0 0 0	
0 25 3/5	7 12 2 7		6	 지 방 교 육	-세 금 ㅇㅇ,() () () 원
(6) 취득세(능· 	록면허세) 금〇〇	0,000원	6	농어촌특별		000원
7 세 액	합 합 계	금			000,000	원
		금			15,000	원
8 등 기 신	청 수 수 료	납부번호	: 0	0-00-	000000	00-0
		일괄납부	- :	건		원
	9	첨 부	入	러 면		
• 취득세(등록)	면허세)영수필확	인서 1통	<기E	}>		
• 등기신청수	수료 영수필확인	서 1통				
・토지·임야대	장등본	1통				
• 주민등록표	등(초)본	1통				
· 위임장		토				
	Ź	2013년	<i>5</i> 월	1일		
10 위신	청인 이	대	예	<u>(1)</u>	(전화: 300-776	6)
(또는	:)위 대리인				(전화:)
٨-	 욱중앙 지방법	원			등기국 귀중	-

삭1행

- 신청서 작성요렁 -

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소유권보존등기신청

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

미등기 토지(임야)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, 토지대장,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,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,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,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대장등본에 등록된 토지(임야)의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합니다.

② 둥기의 목적란

"소유권보존"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③ 신청근거규정란

- ☞ 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",
- 따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",
- ⓒ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"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신청인란

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고,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,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, 국민주택채권발



행번호란

- ⑦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(등록면허세)납부서(OCR용지)에 기재된 시가표 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.
- ①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.
- ©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,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.
- 한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.

⑥ 취득세(등록면허세)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란

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,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⑦ 세액합계란

취득세(등록면허세)액, 지방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⑧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 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 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 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⑨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10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때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



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(등록면허세)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(등록면허세)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(등록면허세)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토지(임야)대장등본

등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임야의 대장등본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③ 주민등록표등(초)본

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④ 기타

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 본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둥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393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주민등록표등(초)본, 토지(임야)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